28.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 2017년 11월 1일○ 제 출 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O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일

O 상정일자 :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년 11월 22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점식)

□ 제안이유

O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교육박물관'을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과 소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O 현행 조례 제3장에 제10절 '대구교육박물관'을 추가하여 다음 조항을 신설함
 - 설치 근거 및 목적과 위치를 규정함(안 제50조)
 - 관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1조)
 - 소관 업무를 규정함(안 제52조)
 - 부속시설의 설치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함(안 제53조, 제54조)

3. 검토보고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노인만)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거 교육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학생들의 전통문화 체험기회 확대를 위하여 신설하는 '대구교육박물관'을 현행「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장 제10절(안 제50조부터 안 제54조)에 추가하려는 것임

O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50조에서, 교육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연구 및 학생들의 전통문화 체험기회 확대 와 시민들의 교육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북구 대동로1길 40에 '대구교육박물관'을 두도록 규정함
- **안 제51조에서**, 교육박물관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함
- 안 제52조에서, 교육박물관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
 -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 및 교육
 - 3.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 4. 전통문화교육과 관련한 체험학습 및 문화강좌·행사의 운영
 - 5.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 제53조에서**, 교육박물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54조에서**, 교육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 료(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2018. 4. 1. 개관을 목표로 건립중인 '대구교육박물관'을 조례에 추가하여, 교육박물관의 설치 근거 및 위치, 관장의 책무 및 업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 현재 건립중인 교육박물관은 교육역사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과 교육역사에 대한 체험공간 마련을 위해 97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 타시도 박물관 견학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음

〈대구교육박물관 신설 추진 현황〉

① 사업추진 개요

위치	부지면적 (㎡)	건물규모 (㎡)	사업비 (천원)	공사 기간	신 설 예정일	수용인원
북구 대동로 1길 40	14,003	5,270 (지상 4층)	9,694,000	'17.11.20. '18. 3.28.	2018. 4.1.	연간 5만명 (관람객 3만명 프로그램운영 2만명)

②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

조직	원장	교육학예부(8명)	총무부(6명)
<u> </u>	4급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학예연구사 2명, 파견교사 2명, 행정 1명	5급 1명, 행정 3명, 전기 1명,시설관리 1 명
인력		총 계 : 15명	

③ 교육사료 수집 현황

2017.11.1. 현재

구분	도서	문서	기록	복식	용품	교구	목판	서화	민속	도자기	기타	계
교육	6,008	1,571	2,140	200	271	175					170	10,535
행정	840	1,114	325	6	193						10	2,488
민속									783	546		1,329
국학	1,389	183	3				8	13				1,596
참고	308	31	18									357
계	8,545	2,899	2,486	206	464	175	8	13	783	546	180	16,305

④ 주요 전시·보존공간 현황

영역	면적(㎡)	실명	주요 전시내용
		교육역사실1	교육사개괄, 전통교육, 개화기교육
		교육역사실2	민족저항기교육, 현대교육, 대구교육관
전시실	1080.0	주제전시실	쌀전시관, 통신관, 화폐관
		기증유물실	토기류, 도기류, 고서, 민속류, 교육관련자료
		기획전시실	연2회 주제별 기획전
	950.4	문화체험실1	교육과정기반의 다양한 문화체험기회제공(힐링음악감상, 트릭아트, 스케치아쿠아리움, 나만의 뉴스만들기)
		문화체험실2	시대별학교체험실(전통,민족저항기,전쟁기,70년대,미래교실 /Virtual Reality구현)
		특수교육체험실	대구가 특수교육의 요람임을 강조하고 생활 속 장애의 이해와 소통의 체험공간구현(멀티타워동영상, 특수교육기기)
체험학습실		유아교육체험실	대구유치원교육역사의 연대적 전시, 유아기자녀 동반 관람객을 위한 배려의 공간 구현(역사블록,퍼즐,교구활용)
			세미나실
		행복공감실	체험프로그램운영(평일, 토요, 방학, 문화의날 체험프로그램)
		준비실	체험프로그램 자료 보관 및 운영 준비실
		고고학체험실	발굴현장제현을 통한 체험프로그램운영 ※추후구축
보존시설	486.0		수장고, 보존처리실, 준비실

- **다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곳도 소수인 실정이므로,
- 대구교육박물관은 타 시도와 차별된 교육역사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연계 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며, 시민·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문화 공간으로써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대구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역사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학생·학부모·시민 등 이용 대상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문화와 교육이 함께하는 교육 박물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이용하는 박물관으로 발전하기 위 해서는 처음 시작할때가 중요한데, 유물구입비가 적지 않은지?	○ 유물은 현재 기증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급적 기증을 통해 운영할 예정으로, ○ 타시도와 차별된 교육역사 자료를 수집·전시하여 시 민들과 학생들이 공감하고 찾아가는 교육박물관으 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5. 토론요지

O 없 음

6. 수정안요지

O 없 음

7. 심사결과

O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요지

O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O 없 음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74
------	------

제출년월일 : 2017. 11. 1. 제출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회계과)

1. 개정 이유

o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교육 박물관"을 설치하고, 그 설치 목적과 소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교육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연구 및 학생들의 전통문화 체험기회 확대와 시민들의 교육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구교육박물관을 대구광역시 북구 대동로1길 40에 설치함 (안제50조)
- 나. 교육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안 제51조)
 - 다. 소관 사무를 정함 (안 제52조)
 -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 및 교육
 - 3)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 4) 전통문화교육과 관련한 체험학습 및 문화강좌·행사의 운영
 - 5)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라. 부속시설의 설치와 사용료 징수를 규정함 (안 제53조, 제54조)
- 3. 개정안: 별첨
- 4. 비용추계서: 별첨

5.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나. 입법예고: 2017. 9. 29. ~ 10. 16. (18일, 의견 없음)

다. 관계법령: 별첨

라. 기타사항

o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규제사항: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0절(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 대구교육박물관

제50조(설치) ① 법 제32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연구 및 학생들의 전통문화 체험기회 확대와 시민들의 교육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구교육박물관(이하 "교육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박물관은 대구광역시 북구 대동로1길 40에 둔다.

제51조(관장) 교육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 및 교육
- 3. 교육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 4. 전통문화교육과 관련한 체험학습 및 문화강좌·행사의 운영
- 5. 그 밖에 교육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부속시설의 설치) 교육박물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교육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절 대구교육박물관
<u>〈신 설〉</u>	제50조(설치) ① 법 제32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박물관자료 의 수집·관리·보존·전시·연구 및 학생들의 전통문 화 체험기회 확대와 시민들의 교육문화 향유 기 회 확대를 위하여 대구교육박물관(이하 "교육박 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박물관은 대구광역시 북구 대동로1길 40에 둔다. 제51조(관장) 교육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
<u>〈신 설〉</u>	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
<u>〈신 설〉</u>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 및 교육 3. 교육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4. 전통문화교육과 관련한 체험학습 및 문화강좌· 행사의 운영 5. 그 밖에 교육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3조(부속시설의 설치) 교육박물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4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교육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개설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u>〈신 설〉</u>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또는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u>〈신 설〉</u>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대구교육박물관 신설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위 치	대구광역시 북구 대동로1길 40	
규 모	부지 14,003㎡, 건물 5,270㎡	전시기본계획에
수용인원	연간 5만명(프로그램운영 20,000명), (관람객 30,000명)	의함
 주요시설	전시·체험학습실 10실(1,985㎡), 보존시설 3실(410㎡), 고객지원공간 7개처(2,415㎡), 운영관리 7실(259㎡)	

나. 비용수반요인

o 구. 대동초등학교(폐교) 개축을 통한 대구교육박물관 신설로 건물개축 및 전시시설제작설치와 시설 개관 이후 기관운영, 전시운영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비용임

다. 비용추계의 전제

0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내 정원조정을 통해 활용하므로 추가로 발생되지 않음

라.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설립비	4,413,000	5,281,000				9,694,000
운영비		1,833,797	1,150,000	1,178,750	1,208,220	5,370,767
총비용	4,413,000	7,114,797	1,150,000	1,178,750	1,208,220	15,064,767

※ 2018년도는 개관행사, 홈페이지 구축비 등 기관신설에 따른 비용 포함

마.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국고(교특)	1,454,000	1,454,000				2,908,000
자체	2,959,000	5,660,797	1,150,000	1,178,750	1,208,220	12,156,767
총비용	4,413,000	7,114,797	1,150,000	1,178,750	1,208,220	15,064,767

바. 작성자: 대구교육박물관설립추진단 학예운영담당사무관 김칠구(053-231-0591)

2. 비용추계 상세내역

가. 인건비

o 총액인건비 내 정원조정을 통해 활용하므로 추가로 발생되지 않음

나. 운영비

- o 대구교육박물관 개관 및 운영에 필요한 전시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유물구입관리, 기관운영비 등을 반영함
- o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타 유사 규모의 박물관 및 직속기관 운영비를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2018년도는 개관 초기 홈페이지 구축, 자료 이관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2019년부터는 통상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o 운영비 추계기간은 공포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으로 하며, 연차적 인상율은 통계청 발표 최근 3년 간 평균 소비자 물가인상율 2.5%를 적용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대구교육박물관 설립	4,413,000	5,281,000				9,694,000
전시운영		574,444	300,000	307,500	315,188	1,497,132
체험프로그램운영		81,902	160,000	164,000	168,100	574,002
유물구입관리		477,020	190,000	194,750	199,619	1,061,389
기관운영비		690,431	500,000	512,500	525,313	2,228,244
합계	4,413,000	7,114,797	1,150,000	1,178,750	1,208,220	15,054,767

※ 2019년 전시운영비 내역: 전시해설사(150,000), 상설전시운영(50,000), 기획전시운영(100,000)2019년 유물구입관리비 내역: 유물구입비(100,000), 자료관리(30,000), 인건비(60,000)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29.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O 제안일자 : 2017년 11월 1일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O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일

O 상정일자 : 제254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년 11월 22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점식)

□ 제안이유

○ 「2018. 3. 1.자로 단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각종학교 1개교를 각각 신설하고, 중학교 1개교의 위치를 변경함

□ 주요내용

O 신설

번호	학 교 명	위 치	개교일자
1	서동중학교 (鋤動中學校)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12길 11-11	2018.3.1.
2	대구삼영초등학교 (大邱三英初等學校)	대구광역시 북구 내곡로 63(사수동)	2018.3.1.
3	대구삼영유치원 (大邱三英幼稚園)	대구광역시 북구 내곡로 63-1(사수동)	2018.3.1.
4	대구해올중·고등학교 (大邱해올中·高等學校)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42 (성당동)	2018.3.1.

O 위치 이전

번호	학 교 명	위	6) z) 6) z)	
		변경 전	변경 후	이전일자
1	구지중학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 11길 9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66길 22	2018.3.1.

3. 검토보고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노인만)

○ 본 개정조례안은 「2018. 3. 1.자 학교 신설(4교), 위치 이전(1교)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조례개정 대상학교 현황	•)
----------------	-----

구 분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종학교	계
학교신설	1	1	1	1	4
위치이전			1		1
계	1	1	2	1	5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2018. 3. 1.자로 신설되는 학교 4개교를 조례에 추가하고, 달성2차 및 대구국가산 업단지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중학생 적정 배치를 위해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와 부지를 공동 사용하는 구지중학교를 분리하여 신설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음
- 다만, 준공 예정일을 3개월 앞둔 현재 6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3개교(삼영유, 삼영초, 해올 중·고)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날씨에 따른 제약이 많은 동절기임을 감안할 때, 공사 추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감독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신설학교 공사추진 현황 】

학교명	위치	학급수	계약현황		공정률
411773	귀시		착공	준공(예정)	(2017.11.17.)
구지중학교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66길 22	25 (특1포함)	2017.02.13	2018.02,07	80%
서동중학교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12길 11-11	31 (특1포함)	2016.12.19	2018.01.22	85%
대구삼영 초등학교	북구 내곡로 63(사수동)	25 (특1포함)	2017.01.16	2018.02.19	65%
대구삼영 유치원	북구 내곡로 63-1(사수동)	15 (특1포함)	2017.01.16	2018.02.19	65%
대구해올 중·고등학교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42 (성당동)	14 (중7,고7)	2017.05,27	2018.01.31	60%

- 또한, 대구해올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하려는 것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설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현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청소년반 학생들과 2018학년도 신입생을 중심으로 정규학급이 편성되고, '마음이자라는학교' 학생들이 위탁학급으로 편성되어 운영되므로, 학생들간에 융화가 잘되어 효과적인 교육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학사 관리, 생활 지도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O 없 음
- 5. 토론요지
 - O 없 음
- 6. 수정안요지
 - O 없 음
- 7. 심사결과
 - O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요지
 - O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O 없 음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75

제출년월일 : 2017. 11. 1. 제출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학교지원과)

1. 개정 이유

o 2018년 3월 1일자 이전하는 중학교 1개교의 위치 변경

o 2018년 3월 1일자 개교되는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 단설유치원 1개원 및 각종학교(대구해 올중·고*) 1개교 추가

*대안교육 수요로 인한 정규학교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안학교

2. 주요 내용

o 위치 이전(안 별표 2)

번호	학 교 명	위	이것이기	
[변호		변경 전	변경 후	이전일자
1	구지중학교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창리 로11길 93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66길 22	2018.3.1.

o 신설(안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8)

번호	학 교 명	위 치	개교일자
1	서동중학교 (鋤動中學校)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12길 11-11	2018.3.1.
2	대구삼영초등학교 (大邱三英初等學校)	대구광역시 북구 내곡로 63(사수동)	2018.3.1.
3	대구삼영유치원 (大邱三英幼稚園)	대구광역시 북구 내곡로 63-1(사수동)	2018.3.1.
4	대구해올중·고등학교 (大邱해올中·高等學校)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42 (성당동)	2018.3.1.

3. 개정안: [붙임 1]

4. 비용추계서: [붙임 2]

5. 참고 사항

가. 신ㆍ구대비표: [붙임 3]

나. 입법예고: 2017. 9. 21. ~ 10. 10. (20일, 의견 없음)

다. 관계법령: [붙임 4]

라. 기타사항

o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o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

o 규제사항: 해당사항 없음